

여신거래 관련 표준 추가약정서 제·개정 전문

1 | 추가약정서(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Ⅱ) <개정>

추가약정서

(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Ⅱ)

○○상호저축은행 앞 20 년 월 일
채 무 자 : (인)
주 소 :

채무자는 ○○상호저축은행(이하 "저축은행"이라 합니다.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1조(목적) 이 약정서는 **1주택**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, 이하 "주택"이라 합니다.)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^{주1)}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(이하 '규제지역') 또는 수도권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제4조에 따라 기존 보유 주택을 **처분하는 것을** 조건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.

주1) "세대"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)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

제2조(처분대상 주택)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**보유** 하고 있는 **주택**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3조 (구입대상 주택)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**구입하는**

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4조 (처분대상 주택 처분의무)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제3조의 구입대상 주택이 규제지역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**6개월 이내에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해야** 합니다.

②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제5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1. 제4조에 따라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의 처분(명의이전 완료)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2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

제6조 (여신거래 약정위반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제공일로부터 향후 3년간 금융기관^{주2)}의 주택 관련 대출^{주3)}이 제한됩니다.

주2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주3) 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<별표5>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

1. 제4조에 따라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의 처분(명의이전 완료)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2.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

추 가 약 정 서

(전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

○○상호저축은행 앞 20 년 월 일
 채 무 자 : (인)
 주 소 :

채무자는 ○○상호저축은행(이하 "저축은행"이라 합니다.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1조(목적) 이 약정서는 세대^{주1)}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 또는 수도권 소재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하며, 주택담보대출 실행일(중도금 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**6개월 이내**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**전입**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거래를 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.

주1) "세대"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)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

제2조(전입 대상 주택)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구입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3조(전입 의무)

- ①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**제2조의 구입 대상 주택에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.**
- ②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전항에 따라 전입을 완료한 경우, 즉시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저축은행에 제

출해야 합니다.

제4조(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1.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조의 구입 대상 주택으로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
제5조(여신거래 약정위반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완제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향후 3년간 금융기관^{주2)} 주택 관련 대출^{주3)} 이 제한됩니다.

주2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 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주3) 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<별표5>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

1.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(다만, 주택이 분양권, 조합원 입주권 등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등기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) 이내에 제2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2. 제2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